

거창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2~11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2, 4
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개정이유

- 감사를 청구하여야 할 경우,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가 너무 많아, 실질적으로 주민감사를 청구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주민감사 청구시, 주민의 수를 낮추고자 함.

주요골자

- 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당초 “1,000분의 10이상”에서 “200명 이상”으로 개선(안 제2조)

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
-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 방안(2002.1.29 시·군 감사관 회의서류)

거창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1,000분의 10이상”을 “20세이상 주민중 200명이상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감사청구 주민수) 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<u>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1,000분의 10이상</u> 이어야 한다.	제2조(감사청구 주민수) <u>20세이상 주민중 200명이상</u>